

서울특별시 공유(共有)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유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38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최유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규남,
김영철, 김원중, 김원태,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박 석, 박영한,
박중화, 신복자, 유만희,
이성배, 이숙자, 이종태,
이종환, 채수지, 최민규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공유(共有) 촉진 조례」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, 공유 촉진위원회의 설치 등 다양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.
- 그러나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, 상설 위원회의 필요성이 낮아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안전 발생 시점에만 구성하고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변경하고자 함.
- 또한, 기본계획을 필요 시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, 조례의 표현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는 준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본계획을 필요 시 수립 가능하도록 조정(안 제5조의2제1항)
- 나. 위원회를 설치·운영에서 필요 시 구성 가능한 비상설 체제로 전환(안 제11조제1항 및 제5항)
- 다. 위원회 소집 근거를 "안전 발생 시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"로 한정(안 제13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공유(共有) 촉진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공유(共有)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(共有)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 중 “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를 “수립·시행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그 실적을 평가해야”를 “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”을 “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”으로, “「협동조합기본법」”을 “「협동조합 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제3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표창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공유”를 “시장은 공유”로, “지원”을 “지정”으로, “위하여 시장 소속으로”를 “위하여”로, “설치한다”를 “구성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혁신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”를 “호선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

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위원회 회의는 안건 발생 시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의2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<u>5년마다</u>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략)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<u>해마다</u>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<u>그 실적을 평가</u>해야 한다.</p>	<p>제5조의2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 ----- --- <u>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시행</u> <u>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</u> ---- -----.</p>
<p>제8조(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) ① 시장은 「<u>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</u>」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, 「민법」에 따른 비영리법인, 「<u>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중소기업, 「서</p>	<p>제8조(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) ① ----- 「<u>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</u>」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기본법」 또는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, 법인 및 기업을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9조의2(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, 단체, 법인,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1조(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)

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

----- 「협동조
합 기본법」 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2(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 -----

제11조(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)

① 시장은 공유 -----
----- 지정 -----
----- 위하여 -----

속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 (생략)

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혁신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.

④ (생략)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(생략)

제13조(회의) ① (생략)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~ ⑤ (생략)

---- 구성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 호선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회 회의는 안건 발생 시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공유(共有)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유(共有)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공정촉진위원회의 비상설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참고로 위원회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변화(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)를 검토¹⁾하였으나 서울시 관련부서(행정국 시민협력과) 문의 및 각종 정보확인 결과 별다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
- 또한 안 제5조의2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는 기본계획을 필요 시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유연성을 강화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수반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 병 준
추계세제팀장	김 중 현
추계분석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서울시 관련부서(행정국 시민협력과) 문의결과 최근 3년간 연평균 2회(2022년 2회, 2023년 1회, 2024년 1회) 이상 개최된 바 없어 향후 **안전 발생 빈도가 지금과 같은 추이일 경우**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도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

- 다만 향후 공정촉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관련 **안전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의 여지**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**안전 증가를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요소가 없어** 고려대상에서 제외함